

이사회 회의록

< 식 순 >

■ 법인 이사회 회의 (진행: 조재영 사무국장)

1. 일 시 : 2016. 03. 21 (월) 18:00~
2. 장 소 : 법인 주사무소 1층 사무실
3. 참석자 : 총 7명(이사7명)
4. 회의순서 및 내용

성원보고

개회선언

이사장 인사

의안 채택

- 제1호 의안 : 2015년 법인 세입·세출 결산보고의 건

- 제2호 의안 : 2015년 법인 후원금품 결산보고의 건

- 제3호 의안 : 2015년 늘푸른요양원 세입·세출 결산보고의 건

- 제4호 의안 : 2015년 늘푸른요양원 후원금품 결산보고의 건

의안 심의

폐회



선암
복지재단

사랑드림사회복지재단

이사회 의사록

사회복지법인 사랑드림사회복지재단

위 법인은 2016. 03. 21 . 18시 00분 주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.

총 이사 수 7명 출석 이사 수 7명

의장(조현대)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최를 선언한 후,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

제1호 의안 2015년 법인 세입·세출 결산보고의 건

- 조재영 원장 : 본 사안은 먼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법인의 2015년도 법인 세입·세출 결산보고함.
- 김태조 이사 : 불용품매각대에 대하여 설명을 요함.
- 조현대 대표이사 : 법인차량 매그너스 노후화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하여 2015년도에 매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개인(천성문)에게 500,000원 받고 매도한 금액이라고 설명함.
- 이옥규 이사 : 폐차처리 비용보다 높게 매도해서 법인에 이익을 창출하였다고 부가 설명함.
- 조현대 대표이사 : 사랑드림사회복지재단의 결산서를 설명하고 참석이사를

이 결산자료를 검토한 후 가부를 묻은 바 이우규 이사가 동의하고 최영욱 이사가 재청하며 참석이사 전원 박수와 함께 가결하다.

제2호 의안 2015년 법인 후원금품 결산보고의 건

- 이상근 이사 : 2015년도 예산보다 세입이 증가 하였는 것은 후원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.

- 조현대 대표이사 : 조계영 원장이 개인후원자를 많이 발굴하여 법인 후원금이 증가함을 재차 설명함.

- 최영욱 이사 : 항상 후원자 발굴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 후원금 수입이 예산보다 더 늘어 법인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함.

- 사랑드림사회복지재단 후원금품 수입·지출 사용내역을 참석이사들이 자료를 검토한 후 가부를 묻은 바 최영욱 이사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와 함께 이우규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박수와 함께 가결한다.



제3호 의안 2015년도 늘푸른요양원 세입·세출 결산보고의건

- 조계영 원장 : 늘푸른요양원의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을 설명하면서 결산의 감소의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다.

- 김태조 이사 : “사랑드림사회복지재단 및 산하기관은 관계법규 준수 및 규정에 맞추어 잘하고 있어 수고가 많다”라고 말하며 지역사회의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대표이사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전하다.

- 조현대 대표이사 : 2015년도 늘푸른요양원 결산보고의건을 참석이사들이 자료를 검토한 후 가부를 묻은 바 김태조 이사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

와 함께 이상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박수와 함께 가결하다.

제4호 의안 - 2015년도 늘푸른요양원 후원금품 결산보고의 건

- 조현철 이사 : 많은 후원자들께서 늘푸른요양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어르신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후원금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재영 원장에게 당부드린다고 요구하다.
- 조재영 원장 : 유인물을 참조 해주십시오. 후원물품은 물품관리대장으로 항상 관리하고 있다고 부가 설명을 하다.
- 조현대 대표이사 : 늘푸른요양원 후원금품 수입·지출 사용내역을 참석이 사들이 자료를 검토한 후 가부를 묻은 바 최영욱 이사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와 함께 이우규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박수와 함께 가결하다.



의장은 이상근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.(회의 종료시간 같은날 19시 30분)

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.

2016. 03. 21 .

이사장 조원대



이사 이상권



이사 김태조



이사 최영욱



이사 조현철



이사 이우규



이사 김윤정

